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 2025. 11. 25.(화) 〕  
〔 제34회 제2차 정례회 〕

# 심사결과보고서



완도군의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1. 13.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1.

다. 상정일자 : 2025. 11. 25.

###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5년도 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완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입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76,508,402	100,000	30,000	0	0	44,377,694	30,295,597	1,153,671	551,4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925,344	0	0	0	0	11,695,344	0	230,0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0,295,597	0	0	0	0	0	30,295,597	0	0
식품진흥기금	115,288	0	0	0	0	111,435	0	2,413	1,440
고향사랑기금	1,990,079	0	30,000	0	0	1,385,079	0	25,000	550,000
청사신축기금	9,355,339	0	0	0	0	9,096,101	0	259,238	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21,039,395	0	0	0	0	20,434,375	0	605,020	0
옥외광고정비기금	187,736	100,000	0	0	0	85,736	0	2,000	0
재난관리기금	1,599,624	0	0	0	0	1,569,624	0	30,000	0

○ 지출계획

(단위: 천원)

기 금 명	지 출 계 획							
	계	비용자성 사업비	용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합 계	76,508,402	767,297	0	0	60,690,331	5,863,414	0	9,187,3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925,344	0	0	0	0	2,738,144	0	9,187,2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0,295,597	0	0	0	30,295,597	0	0	0
식품진흥기금	115,288	18,697	0	0	0	96,591	0	0
고향사랑기금	1,990,079	348,600	0	0	0	1,641,319	0	160
청사신축기금	9,355,339	0	0	0	9,355,339	0	0	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21,039,395	0	0	0	21,039,395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187,736	100,000	0	0	0	87,736	0	0
재난관리기금	1,599,624	300,000	0	0	0	1,299,624	0	0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 말 현재액 <sup>㉔</sup>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2025년도말 현재액 <sup>㉕</sup> = <sup>㉔</sup> + <sup>㉖</sup> - <sup>㉗</sup>	증 감 <sup>㉘</sup> = <sup>㉕</sup> - <sup>㉔</sup>
		수입 <sup>㉖</sup>	지출 <sup>㉗</sup>		
합 계	44,276,995	32,130,708	70,545,691	5,863,414	△38,414,98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695,344	230,000	9,187,200	2,738,144	△8,957,2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30,295,597	30,295,597	0	0
식품진흥기금	111,435	3,853	18,697	96,591	△14,844
고향사랑기금	1,384,919	605,000	348,600	1,641,319	256,400
청사신축기금	8,996,964	259,238	9,256,202	0	△8,996,964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20,432,973	605,020	21,039,395	0	△20,434,375
옥외광고정비기금	85,736	102,000	100,000	87,736	2,000
재난관리기금	1,569,624	30,000	300,000	1,299,624	△270,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5년도말 조성액 <sup>㉔</sup>	용자금 미회수채권 <sup>㉕</sup>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sup>㉖</sup>	총 조성규모 <sup>㉗</sup> = <sup>㉔</sup> + <sup>㉕</sup> - <sup>㉖</sup>
합 계	5,863,414	0	0	5,863,41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738,144	0	0	2,738,14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0	0	0
식품진흥기금	96,591	0	0	96,591
고향사랑기금	1,641,319	0	0	1,641,319
청사신축기금	0	0	0	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0	0	0	0
옥외광고정비기금	87,736	0	0	87,736
재난관리기금	1,299,624	0	0	1,299,624

3. 질의 및 답변 : 내용 기재생략

4. 토론요지 : 내용 기재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기타사항 : 없음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1. 13.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1.

다. 상정일자 : 2025. 11. 25.

###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를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추진하는 등 2025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완도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세입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3회 추경	2회 추경	비교증감	증감률
회계별				
총 계	791,167,859	740,275,158	50,892,701	6.87%
일반회계	759,219,398	710,820,893	48,398,505	6.81%
특별회계	31,948,461	29,454,265	2,494,196	8.47%

3. 질의 및 답변 : 내용 기재생략

4. 토론요지 : 내용 기재생략

5.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안 중 예산액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예산액 등의 계수를 정리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골자

- **세출예산 삭감액(2건) : 33,656천원**

6. 심사결과

- 붙임 심사 조서와 같이 삭감된 예산액을 예비비 과목에 증액하여 **수정가결함**

7. 붙임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붙임]

##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연월일: 2025. 11. 24.

발 의 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외 7명

### 1. 제안이유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한 결과, 예산액의 일부를 삭감키로 결정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

### 2. 수정내역

#### 가. 예산총계규모

(단위 : 천원)

회계별	구 분	예산편성액	심사결과 증감액	수정된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91,167,859	-	791,167,859	-
일	반 회 계	759,219,398	-	759,219,398	-
특	별 회 계	31,948,461	-	31,948,461	-
	기 타 특 별 회 계	31,948,461	-	31,948,461	-
	상 수 도 사 업	29,948,893	-	29,948,893	-
	주 택 자 금 융 자	116,176	-	116,176	-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47	-	47	-
	의 료 급 여 기 금	922,404	-	922,404	-
	농 공 지 구 ( 단 지 ) 조 성 관 리	908,941	-	908,941	-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52,000	-	52,000	-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심사결과 증감액	수정된 예산액	증감률
총	계	759,219,398	-	759,219,398	-
지	방 세 수 입	26,245,369	-	26,245,369	-
세	외 수 입	30,231,250	-	30,231,250	-
	경상적세외수입	8,331,826	-	8,331,826	-
	임시적세외수입	19,722,294	-	19,722,294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267,732	-	1,267,732	-
	지난연도 수입	909,398	-	909,398	-
지	방 교 부 세	306,748,649	-	306,748,649	-
	지방교부세	299,548,649	-	299,548,649	-
	지방소멸대응기금	7,200,000	-	7,200,000	-
조	정 교 부 금 등	14,167,000	-	14,167,000	-
보	조 금	308,293,916	-	308,293,916	-
	국고보조금등	229,742,747	-	229,742,747	-
	시·도비보조금등	78,551,169	-	78,551,169	-
보	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533,214	-	73,533,214	-
	보전수입등	31,702,081	-	31,702,081	-
	내부거래	41,831,133	-	41,831,133	-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심사결과 증감액	수정된 예산액	증감률
합	계	791,167,859	-	791,167,859	-
일	반 공 공 행 정	72,572,572	△26,000	72,546,572	△0.036%
공	공 질 서 및 안 전	7,517,975	-	7,517,975	-
교	육	4,256,233	-	4,256,233	-
문	화 및 관 광	47,981,604	-	47,981,604	-
환	경	105,603,205	-	105,603,205	-
사	회 복 지	150,999,054	-	150,999,054	-
보	건	15,036,669	-	15,036,669	-
농	림 해 양 수 산	187,920,430	-	187,920,430	-
산	업 · 중 소 기 업 및 에 너 지	35,958,255	-	35,958,255	-
교	통 및 물 류	28,691,785	-	28,691,785	-
국	토 및 지 역 개 발	41,321,149	-	41,321,149	-
예	비 비	3,735,534	33,656	3,769,190	0.901%
기	타	89,573,394	△7,656	89,565,738	△0.009

2. 성질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심사결과 증감액	수정된 예산액	증감률
합	계	791,167,859	-	791,167,859	-
인	건 비	88,631,131	-	88,631,131	-
물	건 비	60,167,077	△26,000	60,141,077	△0.04
경	상 이 전	308,344,159	-	308,344,159	-
자	본 지 출	301,573,388	-	301,573,388	-
내	부 거 래	14,089,734	-	14,089,734	-
예	비 비 및 기 타	18,362,370	26,000	18,388,370	0.14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단위: 천원)

<b>총 계</b>	<b>:</b>	<b>2,494,196</b>
<b>가. 상수도사업</b>	<b>:</b>	<b>2,472,116</b>
○ <b>세 입</b>		<b>2,472,116</b>
• 조달청 선금 환불금(완도대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물탱크)	:	322,884
• 일반회계 전입금	:	2,126,347
• 이자수입	:	18,809
• 완도군 수도사업장 고재처리 반환금	:	△87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	4,163
○ <b>세 출</b>		<b>2,472,116</b>
•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 대가	:	2,000,000
• 디지털 수도미터 전환 설치	:	115,424
• 수도 개량기 폐전공사 정산액	:	33,807
• 조달청 선금 환불금(완도대야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물탱크)	:	322,885

(단위: 천원)

**나. 의료급여기금** : **9,209**

○ **세 입** : **9,209**

•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국비) : 7,321

•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지원(도비) : 1,465

• 의료급여사업 군비부담금 : 423

○ **세 출** : **9,209**

• 의료급여관리사 업무추진 여비 : 1,920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27,268

• 본인부담금환급금 : △4,924

• 의료급여 진료비 : 750

• 건강생활유지비 : △693

• 재가급여 시범사업 : 39,424

(단위: 천원)

**다.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 **12,871**

○ **세 입** : **12,871**

해수사용료 : 12,871

○ **세 출** : **12,871**

부지대금 반환금 변제공탁금 : 13,871

농공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 △1,000

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

(단위: 천원)

구 분		3회 추경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b>총 계</b>		<b>444,888,819</b>	<b>410,555,813</b>	<b>34,333,006</b>	<b>8.36%</b>	
일반 회계	<b>소 계</b>	<b>431,149,048</b>	<b>396,825,194</b>	<b>34,323,854</b>	<b>8.65%</b>	
	국고보조사업	313,144,014	281,815,978	31,328,036	11.12%	
	국 비	175,139,946	155,301,881	19,838,065	12.77%	
	균 특	30,519,638	30,410,480	109,158	0.36%	
	기 금	24,083,163	12,139,447	11,943,716	98.39%	
	도 비	20,922,924	19,221,001	1,701,923	8.85%	
	군 비	62,478,343	64,743,169	△2,264,826	△3.50%	
	도비보조사업	106,905,034	103,909,216	2,995,818	2.88%	
	도 비	53,728,245	53,891,576	△163,331	△0.3%	
	군 비	53,176,789	50,017,640	3,159,149	6.32%	
	지방소멸대응기금	11,100,000	11,100,000	-	0.00%	
	도 비	3,900,000	4,900,000	△1,000,000	△20.41%	
	군 비	7,200,000	6,200,000	1,000,000	16.13%	
	특별 회계	<b>소 계</b>	<b>13,739,771</b>	<b>13,730,619</b>	<b>9,152</b>	<b>0.07%</b>
국고보조사업		13,739,771	13,730,619	9,152	0.07%	
국 비		150,216	142,895	7,321	5.12%	
균 특		9,450,000	9,450,000	-	0.00%	
기 금		52,000	52,000	-	0.00%	
도 비		1,245,044	1,243,579	1,465	0.12%	
군 비	2,842,511	2,842,145	366	0.01%		

[ 불 임 ]

##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조서

완 도 군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조서

## 《민원봉사과》

(단위: 천 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안	수정 예산안	증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재무 활동	보전 지출	보조 사업 반환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금 반환금	○ 2024년 여권 사무대행 국고 보조금 잔액 반납	10,007	2,351	△7,656	
		-	이	하	빈	칸	-		

《의회사무과》

(단위: 천 원)

과 목					사업명	예산안	수정 예산안	증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지방 의회 운영 지원	의회 운영	의정 활동 지원	의회비	의원 국외 여비	○ 의원 국외연수	36,000	10,000	△26,000	
		-	이	하	빈	칸	-		

○ 세출예산 삭감액

(단위: 천 원)

부 서	건 수	삭 감 액	비 고
총 계	2건	△33,656	
기 획 예 산 실			
인구일자리정책실			
관 광 실			
해양치유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1	△7,656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			
관 광 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축산과			
해양정책과			
해조류박람회추진단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1	△26,000	

# 행정자치위원회

## □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심사결과
제3505호	2025.11.06.	지 민 의원	2025.11.20.	2025.11.20.	원안가결
제3506호	2025.11.06.	조영식 의원	"	"	원안가결
제3507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08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09호	2025.11.14	완 도 군 수	"	"	부 결
제3510호	2025.11.14	완 도 군 수	"	"	부 결
제3511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12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13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14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15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16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17호	2025.11.10	완 도 군 수			원안가결
제3518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19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20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21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22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23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24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25호	2025.11.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시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

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506호】

##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6. 조영식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정착과 체계적인 영양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영양·식생활교육 및 영양관리사업(안 제5조, 제6조)
-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안 제7조)
- 참여자 지원 등 및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안 제8조, 제9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국민영양관리법」제 8조 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식생활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제9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안번호 : 제3507호】

##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2024.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다자녀 출생 가정에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 지원 신설(별표)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1. 신청일 기준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둔 가정
    2. 부 또는 모,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촬영비 신청일 현재까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첫 돌사진 촬영비 지원(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격려하는 따뜻한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1

## 현행

[별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거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주거 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li> <li>1.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li> <li>2. 혼인신고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li> <li>3. 주택가격 6억원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인 경우</li> <li>4. 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 주택마련 대출이자 지원 - 실제 이자 납부액 지원(월 최대 25만원)</li> <li>• 지원기간 : 최대 3년</li> </ul>
노인 목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에 따름</li> </ul>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조례」에 따름</li> </ul>	
전입세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li> </ul>	
출산·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li> </ul>	
귀농·귀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에 따름</li> </ul>	

## 붙임2

## 개 정 안

[별표]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 부부로 주거 마련을 위해 금융 기관에서 주거 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 시 주민등록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완도에 주소를 둔 경우</li> <li>2. 혼인신고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인 경우</li> <li>3. 주택가격 6억원 이하(주택구입·전세 동일)인 경우</li> <li>4. 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 주택마련 대출이자 지원 - 실제 이자 납부액 지원(월 최대 25만원)</li> <li>• 지원기간 : 최대 3년</li> </ul>
노인 목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조례」에 따름</li> </ul>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조례」에 따름</li> </ul>	
전입세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li> </ul>	
출산·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li> </ul>	
귀농·귀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에 따름</li> </ul>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li> <li>1. 신청일 기준 셋째아 이상 출생아를 둔 가정</li> <li>2. 부 또는 모,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촬영비 신청일 현재까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금액 : 첫 돌사진 촬영비 지원</li> <li>- 20만원 한도 실비 지원</li> </ul>

【별지 제1호서식】

##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자녀 성명		자녀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신청인 성명		신청인 생년월일	. . .	자녀와의 관계	부/모
전화번호		주소			
돌사진 계약내용					
업체명		계약일자	. . .	촬영금액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 통장사본 2.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3. 돌사진 촬영계약서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5. 촬영사진	1. 주민등록 등본·초본 (부 또는 모, 출생아가 출생신고일로부터 촬영비 신청일 현재까지 완도군에 주민등록 여부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급 계좌, 돌사진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완도군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안번호 : 제3508호】

#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1. 20.

다. 상정일자: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세부내용을 구체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작은 학교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제5조 제목 변경
  - 농촌유학 지원센터 운영 → 농촌유학시설 운영
-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 사용료, 관리·운영의 위탁, 수당, 시행규칙 조항 신설(안 제6조 ~ 제8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정비 및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작은 학교”란 완도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농촌유학 지원센터 운영)”을 “(농촌유학시설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촌유학센터를”을 “농촌유학시설을”로 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농촌유학 신청자
  2.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
- ② 공실 발생 시 군수가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
- ③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기간,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을 이용하는 사

람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산정 기준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농촌유학시설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종전의 제7조)제3호 중 “**군수**”를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작은 학교”란 완도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u></p>
<p>제5조(농촌유학 지원센터 운영)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u>농촌유학센터</u>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p> <p><u>&lt;신설&gt;</u></p>	<p>제5조(농촌유학시설 운영) ----- ----- ----- <u>농촌유학시설</u>을 ----- -----.</p> <p>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p> <p><u>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농촌유학 신청자2.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② 공실 발생 시 군수가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③ 입</u></p>

<신 설>

대차계약 체결, 입주기간,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 산정 기준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③ 농촌유학시설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신 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생략)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제9조 (생략)

<신설>

<신설>

제9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10조(협의회 기능) -----

-----  
-----.

1.·2. (현행과 같음)

3. -----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

--

제11조·제12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3조(수당 등) 협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도  
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의안번호 : 제3509호】

##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4.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1. 20.

다. 상정일자: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2026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위하여 조례·규칙 개정
  - 농정분야 통합을 통한 원스톱 농업민원 처리로 민원인 편의 증대 및 행정효율성 증대 등

#### 나. 주요내용

- 농업축산과 및 농업기술센터 통합
  - 본청 농업축산과 폐지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신설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본청 농업축산과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축산과를 신설함으로써 유사업무 통합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부 결(만장일치)**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체육진흥과, 농업축산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개정안 (조직개편) 찬/반	제 출 의 견
[공동의견] 5개 단체 <sup>1)</sup> 협의회장 위*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정분야를 행정적인 민원문제로만 국한시킴으로 급변하는 기상이변과 환경에 따른 현장중심이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농업을 위축시켜 미래 완도의 농업이 퇴화할 것입니다.</li> <li>○ 농업은 행정기구의 통합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 경험, 세분화된 전문 기술교육과 보급 등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li> <li>○ 완도군 농업인과 충분한 대화가 없이 이뤄진 입법예고를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li> </ul>
한국여성농업인 완도군연합회 완도읍 사무국장 윤*주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의 입장에서 군청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 센터가 떨어져 있어 두 곳을 방문하는 것이 불편했으며, 유사 업무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았음</li> <li>○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합에 찬성함</li> </ul>

1) 의견제출 5개 단체

- 가. 한국농촌지도자 완도군연합회 회장 신\*송
- 나. 한국여성농업인 완도군연합회 회장 신\*화
- 다.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 회장 지\*관
- 라. 완도군 생활개선회 회장 심\*경
- 마. 완도군 4H 연합회 회장 박\*순

【의안번호 : 제3510호】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4.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1. 20.

다. 상정일자: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2026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위하여 조례·규칙 개정
  - 농정분야 통합을 통한 원스톱 농업민원 처리로 민원인 편의 증대 및 행정효율성 증대 등

#### 나. 주요내용

- 농업 관련 부서 인력 재배치
  - 지도관 정원 1명 감소 / 5급 일반직 정원 1명 증가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농업 관련 부서의 지도관 정원을 1명 감소하고 5급 일반직 정원 1명을 증가시켜 부서 인력을 재배치 하고자 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부 결(만장일치)**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본 청						
합 계				751		732			19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반직	소 계			723		704			19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6	18	2	1	12	3
	6급 이하			681		665			16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별표 3]

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비고
100%	1%이내	5%이내	28%이내	32%이내	22%이내	11%이상	1%이내	

2. 연구·지도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	연구관	연구사	계	지도관	지도사
100%	10%이내	90%이상	100%	10%이내	90%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100%			100%		

**개 정 안**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합 계				751	732				19
정 무 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 반 직	소 계			<b>724</b>	<b>705</b>				19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b>37</b>	<b>17</b>	<b>4</b>	1	12	3
	6급 이하			681	665				16
	전문경력관			1	1				-
연 구 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 도 직	소 계			<b>22</b>	<b>22</b>				-
	지도관			<b>1</b>	-	<b>1</b>	-	-	-
	지도사			21	21				-
별 정 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별표 3]

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고
100%	1%이내	6%이내	28%이내	31%이내	22%이내	11%이상	1%이내	

2. 연구·지도직 공무원

연구직			지도직		
계	연구관	연구사	계	지도관	지도사
100%	10%이내	90%이상	100%	10%이내	90%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100%			100%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합 계</th> <th rowspan="2">본 청</th> <th rowspan="2">직속 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읍면 및 출장소</th> <th rowspan="2">의 회 사무과</th> <th colspan="7"></th> </tr> <tr> <th>합 계</th> <th>본 청</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 및 출장소</th> <th>의 회 사무과</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751</td> <td colspan="4">733</td> <td colspan="2">18</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2">정무직</td> <td>소 계</td> <td>1</td> <td colspan="4">1</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군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7">일반직</td> <td>소 계</td> <td>723</td> <td colspan="4">704</td> <td colspan="2">19</td> <td colspan="4"></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4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4내지5급</td> <td>3</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5급</td> <td>36</td> <td>18</td> <td>2</td> <td>1</td> <td>12</td> <td>3</td> <td colspan="4"></td> </tr> <tr> <td>6급 이하</td> <td>681</td> <td colspan="4">665</td> <td colspan="2">16</td> <td colspan="4"></td> </tr> <tr> <td>전문경력관</td> <td>1</td> <td colspan="4">1</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2">연구직</td> <td>소 계</td> <td>3</td> <td colspan="4">3</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연구사</td> <td>3</td> <td colspan="4">3</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3">지도직</td> <td>소 계</td> <td>23</td> <td colspan="4">23</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지도관</td> <td>2</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지도사</td> <td>21</td> <td colspan="4">21</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2">별정직</td> <td>소 계</td> <td>1</td> <td colspan="4">1</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7급상당</td> <td>1</td> <td colspan="4">1</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3				18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반직	소 계	723	704				19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6	18	2	1	12	3					6급 이하	681	665				16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p>[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합 계</th> <th rowspan="2">본 청</th> <th rowspan="2">직속 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읍면 및 출장소</th> <th rowspan="2">의 회 사무과</th> <th colspan="7"></th> </tr> <tr> <th>합 계</th> <th>본 청</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 및 출장소</th> <th>의 회 사무과</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td> <td>751</td> <td colspan="4">733</td> <td colspan="2">18</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2">정무직</td> <td>소 계</td> <td>1</td> <td colspan="4">1</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군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7">일반직</td> <td>소 계</td> <td>724</td> <td colspan="4">705</td> <td colspan="2">19</td> <td colspan="4"></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4급</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4내지5급</td> <td>3</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5급</td> <td>37</td> <td>17</td> <td>4</td> <td>1</td> <td>12</td> <td>3</td> <td colspan="4"></td> </tr> <tr> <td>6급 이하</td> <td>681</td> <td colspan="4">665</td> <td colspan="2">16</td> <td colspan="4"></td> </tr> <tr> <td>전문경력관</td> <td>1</td> <td colspan="4">1</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2">연구직</td> <td>소 계</td> <td>3</td> <td colspan="4">3</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연구사</td> <td>3</td> <td colspan="4">3</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3">지도직</td> <td>소 계</td> <td>22</td> <td colspan="4">22</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지도관</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 colspan="4"></td> </tr> <tr> <td>지도사</td> <td>21</td> <td colspan="4">21</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 rowspan="2">별정직</td> <td>소 계</td> <td>1</td> <td colspan="4">1</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r> <td>7급상당</td> <td>1</td> <td colspan="4">1</td> <td colspan="2">-</td> <td colspan="4"></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3				18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반직	소 계	724	705				19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7	17	4	1	12	3					6급 이하	681	665				16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2	22				-						지도관	1	-	1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3				18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반직	소 계	723	704				19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6	18	2	1	12	3																																																																																																																																																																																																																																																																																																																																																																																																																																																																										
	6급 이하	681	665				16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3	23				-																																																																																																																																																																																																																																																																																																																																																																																																																																																																										
	지도관	2	-	2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의 회 사무과																																																																																																																																																																																																																																																																																																																																																																																																																																																																				
합 계		751	733				18																																																																																																																																																																																																																																																																																																																																																																																																																																																																										
정무직	소 계	1	1				-																																																																																																																																																																																																																																																																																																																																																																																																																																																																										
	군수	1	1	-	-	-	-																																																																																																																																																																																																																																																																																																																																																																																																																																																																										
일반직	소 계	724	705				19																																																																																																																																																																																																																																																																																																																																																																																																																																																																										
	3급	1	1	-	-	-	-																																																																																																																																																																																																																																																																																																																																																																																																																																																																										
	4급	1	-	1	-	-	-																																																																																																																																																																																																																																																																																																																																																																																																																																																																										
	4내지5급	3	3	-	-	-	-																																																																																																																																																																																																																																																																																																																																																																																																																																																																										
	5급	37	17	4	1	12	3																																																																																																																																																																																																																																																																																																																																																																																																																																																																										
	6급 이하	681	665				16																																																																																																																																																																																																																																																																																																																																																																																																																																																																										
	전문경력관	1	1				-																																																																																																																																																																																																																																																																																																																																																																																																																																																																										
연구직	소 계	3	3				-																																																																																																																																																																																																																																																																																																																																																																																																																																																																										
	연구사	3	3				-																																																																																																																																																																																																																																																																																																																																																																																																																																																																										
지도직	소 계	22	22				-																																																																																																																																																																																																																																																																																																																																																																																																																																																																										
	지도관	1	-	1	-	-	-																																																																																																																																																																																																																																																																																																																																																																																																																																																																										
	지도사	21	21				-																																																																																																																																																																																																																																																																																																																																																																																																																																																																										
별정직	소 계	1	1				-																																																																																																																																																																																																																																																																																																																																																																																																																																																																										
	7급상당	1	1				-																																																																																																																																																																																																																																																																																																																																																																																																																																																																										
<p>[별표 3] <u>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u></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전문경력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1% 이내</td> <td>5% 이내</td> <td>28% 이내</td> <td>32% 이내</td> <td>22% 이내</td> <td>11% 이상</td> <td>1%이내</td> <td></td> </tr> </tbody> </table>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고	100%	1% 이내	5% 이내	28% 이내	32% 이내	22% 이내	11% 이상	1%이내		<p>[별표 3] <u>완도군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u></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계</th> <th>4급 이상</th> <th>5급</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전문경력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00%</td> <td>1% 이내</td> <td>6% 이내</td> <td>28% 이내</td> <td>31% 이내</td> <td>22% 이내</td> <td>11% 이상</td> <td>1%이내</td> <td></td> </tr> </tbody> </table>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고	100%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22% 이내	11% 이상	1%이내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고																																																																																																																																																																																																																																																																																																																																																																																																																																																																									
100%	1% 이내	5% 이내	28% 이내	32% 이내	22% 이내	11% 이상	1%이내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고																																																																																																																																																																																																																																																																																																																																																																																																																																																																									
100%	1% 이내	6% 이내	28% 이내	31% 이내	22% 이내	11% 이상	1%이내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개정안 (조직개편) 찬/반	제 출 의 견
[공동의견] 5개 단체 <sup>2)</sup> 협의회장 위*은	반대	<p>○ 농정분야를 행정적인 민원문제로만 국한시킴으로 급변하는 기상이변과 환경에 따른 현장중심이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농업을 위축시켜 미래 완도의 농업이 퇴화할 것입니다.</p> <p>○ 농업은 행정기구의 통합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 경험, 세분화된 전문 기술교육과 보급 등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p> <p>○ 완도군 농업인과 충분한 대화가 없이 이뤄진 입법예고를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p>
한국여성농업인 완도군연합회 완도읍 사무국장 윤*주	찬성	<p>○ 농업인의 입장에서 군청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 센터가 떨어져 있어 두 곳을 방문하는 것이 불편했으며, 유사 업무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많았음</p> <p>○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합에 찬성함</p>

2) 의견제출 5개 단체

- 가. 한국농촌지도자 완도군연합회 회장 신\*송
- 나. 한국여성농업인 완도군연합회 회장 신\*화
- 다.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완도군연합회 회장 지\*관
- 라. 완도군 생활개선회 회장 심\*경
- 마. 완도군 4H 연합회 회장 박\*순

【의안번호 : 제3511호】

#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4. 11. 20.

다. 상정일자: 2024.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직위를 직제 순서에 따라 변경하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구성 직제 순으로 변경
  - 해양치유담당관 → 관광실장(안 제8조제3항제1호)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위원회 위원 구성을 직제 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나,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해양치유담당관,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기획예산실장, <u>해양치유담당관, 인구일자리정책실장</u></p> <p>2. (생략)</p> <p>④ (생략)</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u>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u></p> <p>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 제3512호】

##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1. 20.  
다. 상정일자: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건축법」 위임내용과 관계 법규 간 상충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 목적달성 및 법질서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16호에 따라 가설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준 변경(안 제20조제2항제8호다목)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상위법 개정예 따라 완화 (안 제34조제6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간 일관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8호다목 중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단,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해당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p> <p>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 ~ 6. (생 략)</p> <p>7. 삭 제</p> <p>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른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및 간이저온저장고</p> <p>가.·나. (생 략)</p> <p>다. 간이저온저장고 : <u>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u></p> <p>9. (생 략)</p> <p>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⑤ (생 략)</p> <p>&lt;신 설&gt;</p>	<p>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8. ----- -----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것(단,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해당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제외한다.)</u></p> <p>9.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31조</p>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  
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  
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  
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의안번호 : 제3513호】

##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1. 20.

다. 상정일자: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통합 돌봄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지역계획 수립, 통합지원 서비스 및 절차(안 제4조~제9조)
- 통합지원 기반(전담조직 및 협의체) 조성(안 제10조~제14조)
- 기타사항(안 제15조~제20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다.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질병, 사고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완도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자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위탁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완도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 참석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면 사무소에 지역 주민들이 통

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 ① 군수는 본청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과장, 보건의료원장,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진·완도지사장,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관계자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1조에 따른 업무담당 조직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문단) 군수는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약 등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통합지원 기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연계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제3514호】

##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1. 20.

다. 상정일자: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건인 출생신고 시부터 부모 모두 도내 거주요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모 중 1인 이상이 전입하지 않고 출생아동의 출생 신고만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출생기본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출생아동의 조건 보완 (안 제2조제2호나목)
-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건인 보호자(부모 모두)의 도내 거주 조건 충족 시기 조정(안 제4조제2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부모 모두가 도내에 거주해야하는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생아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주소”를 “계속해서 주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을 “보호자 중 1인 이상은”으로, “계속하여”를 “계속해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p> <p>가. (생 략)</p> <p>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 신고를 하고 완도군에 <u>주소</u>를 둔 아동</p> <p>3. (생 략)</p> <p>제4조(지급 대상)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u>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lt;단서 신설&gt;</u></p> <p>③ · ④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u>계속해서 주소</u>-----</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보호자 중 1인 이상은 ----- 계속해서 -----</u> ----- . <u>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 제3515호】

##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1. 20.

다. 상정일자: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건인 출생신고 시부터 부모 모두 도내 거주요건을 인지하지 못한 채 부모 중 1인 이상이 전입하지 않고 출생아동의 출생 신고만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출생기본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 출생아동의 조건 보완 (안 제2조제2호나목)
-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건인 보호자(부모 모두)의 도내 거주 조건 충족 시기 조정(안 제4조제2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완도군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완도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 완도형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은 정부의 당해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원거리 교통비는 시술 차수당 정액 5만원, 연

10회 이내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한다.

② 제5조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 판정을 받고 보조생식술 진료를 시작한 여성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국민 건강보험 적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한 난임부부 시술을 소진한 부부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난임 부부 중 여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배우자	이름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시술 종류 및 차수	시술 종류 [ ] 신선배아 [ ] 동결배아 [ ] 인공수정	시술 회차
인적사항 확인	신청인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 여부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유의사항

1.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 대상임
2.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급 시 환수 조치
3. 완도형 지원 시술결과(출생아 포함)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시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음
4. 첨부서류 2~4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위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시술비 지급 환수 조치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완도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완도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난임 진단서 1부(최초 신청시에만 제출)</li><li>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li><li>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li><li>4.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li><li>5.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시)</li><li>6.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li><li>7. 사실상 혼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을 제출</li><li>8.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li></ol>
------	--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본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 완도군보건의료원
- 개인정보화일(DB)수집의 목적
  -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자 선정 통계자료 수집, 분석, 결과 추출 및 정책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사업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개인정보수집항목
  -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자택번호·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예금주 등
-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완도군에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시 : 5년간
-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내용
  - 주민등록등본 조회 및 가족관계등록부 열람·확인·출력
  -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자 선정신청, 지원내용 확인 및 통계자료 수집분석
  -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타 지원사업과 연계될 경우 활용
  - 가족관계 확인 및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성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 정보 처리	민감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난임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동의확인
			(서명)

【의안번호 : 제3516호】

## (재)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가. 출연대상 : (재)장보고장학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출연목적

- 장학사업 추진 및 장학기금 조성

다.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라. 출연금액 : 2,013,000,000원 (2026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예산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2026. 1. ~ 12	2,100	2,013	2,013			2,013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 제3517호】

##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가. 출연대상 : (재)장보고장학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나. 출연목적

- 해조류 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통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지원
- 해조류·전복 등을 이용한 가정 간편식(HMR) 제품 및 화장품 개발, 기술 이전, 시제품 생산·마케팅 등 군내 영세 가공기업에 대한 지원

다.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라. 출연금액 : 군비 400,000,000원 (2026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예산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2026년	1,680	1,780	1,780	-	400	400	980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 제3518호】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2025. 11. 20.

다. 상정일자: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근 거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행정안전부 / '24. 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 가. 제안이유

- '25년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개시
  - \*일반기부는 해당 '자치단체'에, 지정기부는 미리 공시된 해당 '사업'에 기부
- '25년 전국대회 우승 2회, 준우승 1회 성과와 관내 초등생 유입 기여 반영
- 「완도군 BC 유소년야구단 육성 지원 시즌2(안)」을 '26년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하여 「고향사랑기부금법」제8조의 2에 의거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반영 등 동의를 얻고자 함.

\*'25년 지정기부 「완도군BC 유소년야구단 육성지원」 사업, 4천만원 모금 완료(9.22.)

### 3. 지정기부 사업(안)

- 사업명 : 완도군BC 유소년야구단 육성 지원 시즌2
- 사업내용 : 관내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기여 등 전국대회 우승의 성적을 낸 유소년 야구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 모금기간 : 2026. 1. 1.~ 2026. 12. 31.(1년간)
- 목표금액 : 금50,00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총 계		50,000
· 훈련용품 (트레이닝 용품 등)	5,800,000원 × 1식	5,800
· 훈련 및 대회참가비·버스운영비	2,500,000원 × 12회	30,000
· 선수단 유니폼(동·하계)	130,000원 × 30명 × 2회	7,800
· 지도자 수당(1명)	80,000원 × 8일 × 10개월	6,400

\*'25년 지정기부 「완도군BC 유소년야구단 육성지원」 사업, 1천만원 증액 산정

### 4. 금후 추진일정

- 고향사랑e음, 지정기부 등록 및 모금 게시 : '26. 1.
  - 지정기부 사업 홍보
    - 유소년 야구단 학부모 등 지정기부 사업 수혜자가 주체가 되어 홍보할 수 있도록 기획·추진
- 완도군BC 유소년야구단, 보조금 지원 : '27. 1.
  - \*목표 모금액 달성 시 지원, 미달성 시 모금기간 연장 등 사업(안) 조정

## 5. 참고사항(완도군BC 유소년야구단 현황)

- 창 단 일 : 2024. 3. 4. / 완도군체육회 완도야구협회 산하
- 회원현황 : 31명
  - 선수반 22명 · 취미반 9명 · 감독 1명 · 코치 2명
  - 2학년 2명 / 3학년 9명 / 4학년 6명 / 5학년 11명 / 6학년 3명
- 운영예산 : 금111,500천원('25년도)

6.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 제3519호】

## (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가. 출연대상 :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 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출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 및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 사업 자원 지원

다.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라. 출연금액 : 20,000,000원 (2026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예산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2003년 ~ 계속	20	20	20	-	-	20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 제3520호】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가.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나. 출연목적

-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다.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라. 출연금액 : 2,623,000원 (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예산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2021년 ~ 계속	3.2백만원	2.7백만원	2.7	0	0	2.7	0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3. 세부내역

안건 번호	제출부서	안 건 명	비 고
계		86건 (토지취득 84건, 건물취득 2건)	
제1호	인구일자리 정 책 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 건물취득 - 1동(6,504㎡), 27,000백만원	
제2호	경제교통과	고금면 LPG배관망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 토지취득 - 1필지(1,626㎡), 55백만원	
제3호	경제교통과	고금면 LPG배관망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 토지취득 - 1필지(1,281㎡), 38백만원	
제4호	경제교통과	완도중앙시장 주변 주차공간 매입 ▶ 토지취득 - 1필지(314㎡), 521백만원 ▶ 건물취득 - 1동(1,109㎡), 833백만원	
제5호	체육진흥과	금일 해양치유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 토지취득 - 10필지(28,745㎡), 653백만원	
제6호	체육진흥과	청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 토지취득 - 16필지(21,659㎡), 327백만원	
제7호	체육진흥과	고금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 토지취득 - 1필지(2,122㎡), 43백만원	
제8호	체육진흥과	금일 다목적구장 조명타워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 토지취득 - 2필지(2,473㎡), 223백만원	
제9호	체육진흥과	신지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 토지취득 - 11필지(4,959㎡), 546백만원	
제10호	세무회계과	금일읍, 금당면 일원 토지 기부채납 ▶ 토지취득 - 41필지(563,3611㎡), 220백만원	
제11호	세무회계과	군외면 영풍리 산166-1(임야) 기부채납 ▶ 토지취득 - 1필지(11,107㎡), 12,4백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3522호】

##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수립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나. 수립개요

- 수립기간 : 2026년~2030년도(5개년)
- 수립대상
-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 공유재산 정책방향
  -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
  -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3. 세부내역

내 용	비 고
1.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1-1. 총괄표 1-2. 사용허가계획 1-3. 대부 계획 1-4. 취득·처분 계획	붙임 참조
2.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2-1. 총괄계획 2-2. 항목별 세부계획	붙임 참조
3.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1. 일반재산의 개발 3-2. 일반재산의 출자	붙임 참조
4.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1. 총괄표 4-2. 항목별 징수 계획	붙임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 총괄표 1부. 끝.



## 1-2. 사용허가 계획

### 가. 부서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9	39	104	40	106	41	111	43	114	43	100%	3.60%
인구일자리 정책실	10	3	11	3	11	3	11	3	12	3	10.5%	4.8%
산림휴양과	46	4	48	5	48	5	50	5	50	5	43.9%	2.1%
세무회계과	9	7	9	7	9	7	10	8	10	8	8.8%	2.8%
수산경영과	1	0	1	0	1	0	1	0	1	0	0.9%	0.0%
지역개발과	7	9	9	9	9	10	10	10	10	10	8.8%	9.9%
건설과	9	1	9	1	9	1	10	1	10	1	8.8%	2.8%
체육진흥과	16	15	16	15	18	15	18	16	20	16	17.5%	5.9%
해양정책과	1	0	1	0	1	0	1	0	1	0	0.9%	0.0%

### 나. 회계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9	39	104	40	106	41	111	43	114	43	100%	3.60%
특별회계	99	39	104	40	106	41	111	43	114	43	100%	3.60%

### 1-3. 대부 계획

#### 가. 지역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00	67	412	65	427	68	440	70	450	72	100%	2.99%
완도읍	91	16	94	14	96	15	98	15	99	15	22.0%	2.1%
금일읍	43	12	44	12	46	13	48	13	49	13	10.9%	3.3%
노화읍	32	2	32	2	32	2	33	2	33	2	7.3%	0.8%
군외면	40	4	41	4	42	4	45	5	45	5	10.0%	3.0%
신지면	32	5	32	5	35	5	35	5	36	5	8.0%	3.1%
고금면	8	4	9	4	10	4	10	5	12	5	2.7%	10.9%
약산면	110	14	113	14	115	15	117	15	119	16	26.4%	2.0%
청산면	6	6	7	6	7	6	8	6	8	7	1.8%	7.7%
금당면	15	1	15	1	17	1	18	1	19	1	4.2%	6.2%
소안면	4	1	5	1	6	1	6	1	7	1	1.6%	15.4%
보길면	8	1	9	1	9	1	10	1	10	1	2.2%	5.9%
생일면	11	1	11	1	12	1	12	1	13	1	2.9%	4.4%

#### 나. 회계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비중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00	67	412	65	427	68	440	70	450	72	100%	2.99%
특별회계	400	67	412	65	427	68	440	70	450	72	100%	2.99%

## 1-4. 취득·처분 계획

### 가. 취득 계획

(단위 : 건, m<sup>2</sup>, 백만원)

일련 번호	취득 (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69건				127,229	6,833		
1	2026	일반 회계	토지	완도읍정도리 879-1	잡	1,743	43,575	화흥 간척지 파크골프장	건설과
				완도읍정도리 880-1	잡	2,255	56,385		
				완도읍정도리 881-1	잡	2,261	56,538		
				완도읍정도리 882-1	잡	2,263	56,578		
				완도읍정도리 883-1	잡	2,245	56,140		
				완도읍정도리 884-1	잡	2,269	56,733		
				완도읍화흥리 1070-1	잡	4,445	111,135		
				완도읍화흥리 1071-1	잡	4,513	112,848		
				완도읍화흥리 1073-1	잡	4,483	112,083		
				완도읍정도리 885-1	잡	2,056	51,413		
				완도읍화흥리 1072-1	잡	4,516	112,915		
				완도읍화흥리 1074-1	잡	4,490	112,255		
				완도읍화흥리 1075-1	잡	4,470	111,773		

일련번호	취득(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기준가격)	취득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2	2026	일반회계	토지	완도읍개포로 114번길 9-8	대	616	469,392	노인맞춤 돌봄센터	가족 행복과
			건물	완도읍개포로 114번길 9-8	대	357.29	171,499		
3	2026	일반회계	토지	금일읍신구리 1609-2	답	3,272	95,542	해양치유 생활공원	체육진흥과
				금일읍신구리 1609-1	답	2,055	61,547		
3	2026	일반회계	토지	금일읍신구리 1291	답	1,309	30,630	해양치유 생활공원	체육진흥과
				금일읍신구리 1609-3	답	2,501	65,276		
				금일읍신구리 1609-4	답	2,636	68,799		
				금일읍신구리 1609-6	답	2,330	60,813		
				금일읍신구리 1609-7	답	5,123	133,710		
				금일읍신구리 1609-13	답	2,295	59,899		
				금일읍신구리 1609-14	답	5,981	157,599		
				금일읍신구리 1293	답	1,243	28,340		

연도 회계구분	취득 (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4	2026	일반 회계	토지	청산면양중리 356	전	900	12,645	청산 파크골 프장 조성	체육 진흥과
				청산면양중리 359	전	2,096	28,191		
				청산면양중리 360	묘지	889	11,912		
				청산면양중리 361	전	1,705	22,676		
				청산면양중리 362	전	1,028	13,312		
				청산면양중리 363	전	1,987	26,625		
				청산면양중리 364	전	1,700	22,865		
				청산면양중리 365-1	전	681	9,125		
				청산면양중리 369	전	1,002	12,975		
				청산면양중리 370	전	1,246	16,135		
				청산면양중리 373-1	전	790	11,178		
				청산면양중리 476	답	962	12,506		
4	2026	일반 회계	토지	청산면양중리 478-1	전	1,800	23,940	청산 파크골 프장 조성	체육 진흥과
				청산면양중리 479	전	1,463	19,457		
				청산면양중리 480	답	1,426	18,894		
				청산면양중리 532	전	1,984	26,387		
5	2026	일반 회계	토지	고금면농상리 770-3	전	2,122	43,899	고금 파크골프장	체육 진흥과

연도 면적	취득 (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6	2026	일반 회계	토지	신지면대곡리 716-2	전	962	107,263	신지 국민체육 센터	체육 진흥과
				신지면대곡리 709-10	구	28	2,828		
				신지면대곡리 721-1	답	1,312	146,288		
				신지면대곡리 716-11	대	235	26,672		
				신지면대곡리 726-1	답	787	83,422		
				신지면대곡리 720-1	답	377	42,035		
				신지면대곡리 725-2	답	36	3,816		
				신지면대곡리 727-1	답	657	71,284		
				신지면대곡리 706-2	답	247	27,540		
				신지면대곡리 705-2	답	57	6,355		
				신지면대곡리 728-2	답	261	29,232		
7	2026	일반 회계	토지	신지면대곡 리1937	답	3,000	276,000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지추진	해양 정책과
				신지면대곡 리 1937-1	답	1,100	101,200		
				신지면대곡 리 1937-2	답	1,925	177,100		

일련 번호	취득 (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7	2026	일반 회계	토지	신지면대곡리 1937-3	답	1,545	142,140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지추진	해양 정책과
				신지면대곡리 1937-4	답	1,460	134,320		
				신지면대곡리 1937-5	답	3,000	276,000		
				신지면대곡리 1937-6	답	1,900	174,800		
				신지면대곡리 1937-7	답	1,100	101,200		
				신지면대곡리 1937-8	답	1,100	101,200		
				신지면대곡리 1937-9	답	1,900	174,800		
				신지면대곡리 1937-11	답	900	82,800		
				신지면대곡리 1037-10	답	2,085	191,820		
8	2026	일반 회계	토지	완도읍군내리 782-59	대	314	521,240	주차공간 확보	경제 교통과
			건물	완도읍군내리 782-59	대	1,109	833,100		
9	2026	일반 회계	토지	완도읍 군내리199	전	1,147	57,350	다도해 일출공원 확대	산림 휴양과
				완도읍군내리 199-2	전	3,172	155,428		

## 나. 처분 계획

(단위 : 건, m<sup>2</sup>, 백만원)

일련 번호	처분(예정) 연도	회계 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처분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2건				100			
1	2026년	일반회계	토지 건물	완도군	대지 등	-	100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	

## 2.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 2-1. 총괄계획

####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건, %)

구 분	영구시설물 축조					연평균 증감률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해당사항 없음						

####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장기 사용 허가 등	-	-	-	-	-	-	-	-	-	-	-
양여	-	-	-	-	-	-	-	-	-	-	-
사용료 등 감면	15	72	15	73	17	74	17	74	18	75	4.80%

## 2-2. 항목별 세부계획

###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m<sup>3</sup>)

일련 번호	특례 (예정) 연도	재산표시(토지)			시설 물 종류	축조목적 (관련근거)	허가 등 기간	갱신 가능 기간	허가조건	비고
		소재지	지 목	면적						
해당사항 없음										

###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단위 : m<sup>2</sup>,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장기 사용 대상자	허가등 기간	잔여 기간	갱신 가능 기간	사용료등 총액	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해당사항 없음												

### 다. 양여

(단위 : m<sup>2</sup>,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자	기준가격	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해당사항 없음									

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 m<sup>2</sup>,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감면 대상자	예정가격			감면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산출 금액	감면 금액	부과 금액		
계		15건			5,098.3		88.76	85.76	2.99		
1	2026년	토지	완도읍 군내리 1301-1	대	43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2.18	2.18	0	대한노인회지 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	완도읍
2	2026년	토지	완도읍 군내리 407-23	대	63	황목덕	0.1	0.06	0.04	수급자(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3항 제3호)	
3	2026년	토지	완도읍 군내리 534-2	전	26	허기례	0.06	0.04	0.02	수급자(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3항 제3호)	
4	2026년	토지	완도읍 군내리 595-1	임야	162	정형임	0.05	0.03	0.02	수급자(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제3항 제3호)	
5	2026년	건물	완도읍 군내리 1449	잡	2,518	완도수산물수 출물류협동조 합	64	63.36	0.6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수산 경영과
6	2026년	토지	생일면 유서리 130외 1필지	대	1,072	완도소방서 생일119지역 대	0.22	0.22	0	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4항	안전 총괄과
7	2026년	토지, 건물	완도읍 군내리 782-35,	대	33	청년 창업	1.73	0.86	0.86	완도군공유재 산관리조례제3 2조4항	인구 일자리 정책실

일련 번호	특례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감면 대상자	예정가격			감면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산출 금액	감면 금액	부과 금액		
			1층								
8	2026년	토지, 건물	완도읍 군내리 782-35, 2층	대	11	청년 창업	0.34	0.17	0.17	완도군공유재 산관리조례제3 2조4항	
9	2026년	토지	노화읍 이포리 402	대지	189	특산물 판매자	0.18	0.05	0.13	완도군공유재 산관리조례제3 2조3항	
10	2026년	건물	노화읍 이포리 402	건물	68	특산물 판매자	1.56	0.47	1.09	완도군공유재 산관리조례제3 2조3항	
11	2026년	토지, 건물	완도읍 군내리 782-68	대지	182	청년 창업	0.04	0.03	0.01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12	2026년	건물	완도읍 군내리 782-68, 1~4층	건물	446	청년 창업	0.5	0.49	0.01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13	2026년	건물	완도읍 개포로 115	건물	80	장애인체육회	8.9	8.9	0	국민체육진흥 법 제33조의3 제1항	
14	2026년	건물	완도읍 개포로 115	건물	119	체육회	08.9	8.9	0	국민체육진흥 법 제33조의3 제1항	

### 3.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 3-1. 일반재산의 개발

(단위 : m<sup>2</sup>, 백만원)

일련 번호	개발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개발 방법 (종류)	위탁 기간	개발 사업규모				개발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예산	면적	지하	지상		
해당사항 없음													

#### 3-2. 일반재산의 출자

(단위 : m<sup>2</sup>, 백만원)

일련 번호	출자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출자기관	출자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해당사항 없음									

## 4.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 4-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연평균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계	38	7.97	31	5.08	26	4.45	25	4.45	22	3.89	22	3.76	19	3.26	-5.92%
사용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대부료	36	7.76	28	4.98	26	4.45	25	4.45	22	3.89	22	3.76	19	3.26	-5.92%
매각 대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변상 금	2	0.21	3	0.1	0	0	0	0	0	0	0	0	0	0	0%

### 4-2. 항목별 징수 계획

#### 가. 사용료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계														
해당사항 없음														

#### 나. 대부료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계	36	7.76	28	4.98	26	4.45	25	4.45	22	3.89	22	3.76	19	3.26
완도읍	4	0.16	3	0.11	3	0.1	3	0.1	3	0.1	3	0.1	3	0.1
금일읍	10	1.74	9	1.1	9	1	8	1	8	0.9	8	0.9	7	0.8
군외면	4	0.24	2	0.20	1	0.15	1	0.15	1	0.15	1	0.15	1	0.15
약산면	5	3.27	4	1.47	4	1.40	4	1.40	3	1.24	3	1.11	3	1.11
신지면	13	2.35	10	2.10	9	1.80	9	1.80	7	1.50	7	1.50	5	1.10

#### 다. 매각대금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계														
해당사항 없음														

#### 라. 변상금

##### 1) 징수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계	2	0.21	3	0.1	0	0	0	0	0	0	0	0	0	0
완도읍	0	0	3	0.1	0	0	0	0	0	0	0	0	0	0
군외면	1	0.11	0	0	0	0	0	0	0	0	0	0	0	0
금일읍	1	0.10	0	0	0	0	0	0	0	0	0	0	0	0

## 2) 제고방안

구분	변상금 부과 주요 사유	조치계획(대책)	비고
부서, 읍면	• 무단점유에 따른 부과	• 무단점유자 확인 후 변상금 부과 및 후속조치인 원상복구 명령 또는 대부계약 추진	



### 3. 세부내역

안건 번호	제출부서	안 건 명	비고
계		14건 (토지취득 13, 건물 취득 1)	
제1호	해 양 정 책 과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 토지취득 - 12필지(21,015㎡), 2,241백만원	
제2호	문 화 예 술 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 건물취득 - 1동(3,350㎡), 15,000백만원	
제3호	산 림 휴 양 과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 ▶ 토지취득 - 1필지(4,319㎡), 216백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 제3524호】

##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가. 출연대상 : (재)완도군행복복지재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나. 출연목적

-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다.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라. 출연금액 : 40,000,000원 (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예산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2026년 ~ 2026년	30	40	40			40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 제3525호】

## 국공립 어린이집(완도LH어린이집, 약산어린이집)

### 위탁관리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2.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LH어린이집, 약산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완도LH어린이집, 약산어린이집의 관리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완도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위탁개요

- 시 설 명 : 완도내어린이집, 약산어린이집

연번	어린이집명	대표자	원장	위탁기간(현)	재위탁기간
1	완도내어린이집	오윤영	오윤영	2021. 1. 1. ~ 2025. 12. 31.	2026. 1. 1. ~ 2030. 12. 31.
2	약산어린이집	완도군수	김윤경	2021. 3. 1. ~ 2026. 2. 28.	2026. 3. 1. ~ 2031. 2. 28.

- 시설현황

연번	어린이집명	소재지	인가일	정원	현원	교직원
1	완도내어린이집	완도읍	2021. 1. 1.	30	30	12
2	약산어린이집	약산면	2021. 3. 2.	20	6	4

● 위탁범위 :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

● 운영(주요)사업

-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 운영
-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
-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및 상담
- 기타 보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 방법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및 <완도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 **민간위탁 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 완도LH어린이집: 2026. 1. 1. ~ 2030. 12. 31.(5년간)
- 약산어린이집: 2026. 3. 1. ~ 2031. 2. 28.(5년간)

● **책임한계**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

● **지도·감독**

- 군수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정기 또는 필요시 점검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경과

의안번호	제 출 일	제 출 자	회 부 일	상 정 일	심사결과
제3526호	'25. 11. 6.	김양훈 의원	'25. 11. 20.	'25. 11. 20.	원안가결
제3527호	"	박병수 의원	"	"	원안가결
제3528호	"	조인호 의원	"	"	원안가결
제3529호	'25. 11. 10.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30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31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32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33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34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제3535호	"	완 도 군 수	"	"	원안가결

【의안번호 제3526호】

##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6.

김양훈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관내 상공인 지원 및 적용대상 기관(안 제3조, 제4조)
- 지역상품 등 우선 구매 및 불공정한 회사 감독(안 제5조, 제6조)
- 실태조사 및 평가 및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안 제7조, 제 8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이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 분야에서 관내 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완도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3. “관내업체”란 완도군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실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4. “불공정한 회사”란 실제 사업 활동 없이 형식적으로 설립된 업체를 말한다.

제3조(관내 상공인 지원)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관내 상공인의 기술력 향상, 경영능력 제고,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군은 관내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컨설팅, 정보 제

공, 마케팅, 품질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관내 상공인이 참여 가능한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에 대해 사전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출장소
2. 완도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4. 「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지역상품 등 우선 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등 우선구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연간 발주 계획을 사전에 관내 상공인에게 공유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제6조(불공정한 회사 감독) ① 군수는 불공정한 회사의 공공 계약에 대한 실질적 사업 수행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불공정한 회사로 인

정한다.

1. 사업장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 근무 인력이 없거나, 장비·물품·관련 시설 등 사업 수행 기반이 부재한 경우
  2.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실적이나 경험이 관련 법령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군수는 지방계약법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실시할 경우 불공정한 회사에 대하여 견적제출 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을 수의계약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군수는 관내 상공인의 현황, 역량, 사업 수행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정책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군수는 관내 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527호】

##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6.

박병수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군 내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안 제6조)
- 지원사업 (안 제7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방치 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 지원을 통하여 경관 개선, 환경오염 방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농업기계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도

군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군수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3528호】

##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6. 조인호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군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주도형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 제6조)
- 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 제8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9조, 제10조)
- 섬 관련 행사 추진 등 및 여객선 운임지원(안 제13조, 제14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2.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한다.
3.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 추진 시 적용한다.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5. 섬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섬 별 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완도군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2.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
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
4. 부문별 사업계획
5. 자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발전 정책의 방향
3. 섬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부문별 사업계획의 작성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 의원 2명
2. 섬 발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4.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 ① 군수는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완도군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섬의 날 기념행사
  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
  3. 섬 관련 학술행사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여객선 운임지원) ① 군수는 국가행사의 경우 섬의 날에 완도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 운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섬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법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의안번호 제3529호】

##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 요지

가. 출연대상 : 전남신용보증재단

-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1항제1호

나. 출연목적

- 창업 증가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보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사각지대의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확대
- 지속적인 보증공급 및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

다.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라. 출연금액 : 205,000,000원 (2026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예산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2002년 ~ 계속	205	205	205			205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3530호】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가. 출연대상 : 전라남도

- 근거 :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나. 출연목적

-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융자지원 및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
-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다.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라. 출연금액 : 68,860,000원 (20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예산액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2021년 ~ 2030년	63.8	68.05	68.86			68.86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3531호】

#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읍면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필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2020.3.31.)사항 이행으로 우리군의 청렴도 평가 및 행정투명성 제고

### 나.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시설사용에 대한 투명한 사용 명세(안 제3조제1항)
- 체육시설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대상 추가(안 제10조제2항)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관리강화(안 제12조제2항)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관리강화(안 제23조제2항, 제3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감면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관리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체육시설을”을 “체육시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12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제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공개하고 사용 정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에 사설체육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간판, 광고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용허가) ① <u>체육시설을</u> 사용하려는 사람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p> <p>② ~ ④ (생략)</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lt;신설&gt;</u></p> <p>11. ~ 14. (생략)</p> <p>③ (생략)</p> <p>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u>한</u></p>	<p>제3조(사용허가) ① <u>체육시설은 누</u>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장기복무 제대군인</u></p> <p>12. ~ 15. (현행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하</u></p>

<p>다.</p> <p>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며, 제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공개하고 사용 정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p> <p>제23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에 사설 체육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간판, 광고물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한다.</p>
--	---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경기장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일 시 사 용		주 간		일 시 사 용		주 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농 어 민 문화체육 센 터	45,000	60,000	6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10,000	
고금국민 체육센터	45,000	60,000	6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10,000	
청해진 스포츠센터	80,000	110,000	110,000	160,000	220,000	270,000	330,000	380,000	
공 설 운 동 장	60,000	80,000	80,000	110,000	220,000	250,000	280,000	300,000	
축 구 전용구장	60,000	80,000	80,000	110,000	220,000	250,000	280,000	300,000	
해 신 축 구 장	60,000	80,000	80,000	110,000	220,000	250,000	280,000	300,000	
테니스장 (1면당)	10,000	10,000	10,000	10,000					
야 구 장	60,000	80,000	80,000	110,000					
족 구 장 (1면당)	10,000	10,000	10,000	10,000					
국 궁 장	20,000	30,000	30,000	40,000					

- 주) 1. 일시사용은 4시간 미만, 주간은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2. 공설운동장의 잔디구장 미사용시는 50%감면  
 3. 야간 및 기타시설사용료 등의 가산금은 별도 산출하여 당해 금액을 가산함  
 4. 읍·면 국민체육센터 및 전용사용료는 고금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경기장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비 고
	일 시 사 용		주 간		일 시 사 용		주 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농 어 민 문화체육 센 터	45,000	60,000	6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10,000	
고금국민 체육센터	45,000	60,000	6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10,000	
청해진 스포츠센터	80,000	110,000	110,000	160,000	220,000	270,000	330,000	380,000	
공 설 운 동 장	60,000	80,000	80,000	110,000	220,000	250,000	280,000	300,000	
축 구 전용구장	60,000	80,000	80,000	110,000	220,000	250,000	280,000	300,000	
해 신 축 구 장	60,000	80,000	80,000	110,000	220,000	250,000	280,000	300,000	
테니스장 (1면당)	10,000	10,000	10,000	10,000					
야 구 장	60,000	80,000	80,000	110,000					
족 구 장 (1면당)	10,000	10,000	10,000	10,000					
국 궁 장	20,000	30,000	30,000	40,000					

- 주) 1. 일시사용은 4시간 미만, 주간은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2. 공설운동장의 잔디구장 미사용시는 50%감면  
 3. 야간 및 기타시설사용료 등의 가산금은 별도 산출하여 당해 금액을 가산함  
 4. 읍·면 국민체육센터 및 전용사용료는 고금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읍·면 운동장의 전용사용료는 공설운동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2]

**연습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경기장	구분 기준	개 인			단체(10인이상)			비 고
		어 른	학생·군인	어린이	어 른	학생·군인	어린이	
농 어 민 문화체육 센 터	2시간당 (1인)	1,000	500	무료	700	300	무료	월회원은 20일분 요금징수
고금국민 체육센터	2시간당 (1인)	1,000	500	무료	700	300	무료	
청해진 스포츠센터	2시간당 (1인)	1,800	900	무료	1,200	500	무료	
공 설 운 동 장	"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축 구 전용구장	"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해 신 축 구 장	2시간당 (1인)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테니스장	2시간당 (1인)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야 구 장	2시간당 (1인)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족 구 장 (1면당)	2시간당 (1인)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국 궁 장	2시간당 (1인)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주) 1. 읍·면 국민체육센터 연습사용료는 고금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붙임4

# 개 정 안

[별표 2]

## 연습사용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경기장	구분 기준	개 인			단체(10인이상)			비 고
		어 른	학생·군인	어린이	어 른	학생·군인	어린이	
농 어 민 문화체육 센 터	2시간당 (1인)	1,000	500	무료	700	300	무료	월회원은 20일분 요금징수
고금국민 체육센터	2시간당 (1인)	1,000	500	무료	700	300	무료	
청해진 스포츠센터	2시간당 (1인)	1,800	900	무료	1,200	500	무료	
공 설 운 동 장	"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축 구 전용구장	"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해 신 축 구 장	2시간당 (1인)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테니스장	2시간당 (1인)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야 구 장	2시간당 (1인)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족 구 장 (1면당)	2시간당 (1인)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국 궁 장	2시간당 (1인)	500	300	무료	300	200	무료	

- 주) 1. 읍·면 국민체육센터 연습사용료는 고금국민체육센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읍·면 운동장의 연습사용료는 공설운동장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안번호 제3532호】

##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다른 지자체 초등학생 단체 방문 등으로 인한 관내 주민의 불편발생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필요

#### 나.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대상의 구체화(안 제10조제1항제1호사목)
-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제10조제1항제2호)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 초등학생 단체 방문 증가로 인해 관내 주민 이용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사목 중 “어린이”을 “완도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p> <p>1. 전액감면  가. ~ 바. (생략)  사. <u>어린이</u></p> <p style="padding-left: 2em;">아. (생략)</p> <p>2. 50퍼센트 감면  가. ~ 파. (생략)  <u>&lt;신설&gt;</u></p> <p>3. ~ 5. (생략)  ② (생략)</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  -----  ----. -----  ----.</p> <p>1.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u>완도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u></p> <p style="padding-left: 2em;">아. (현행과 같음)</p> <p>2. -----  가. ~ 파. (현행과 같음)  하. 「<u>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장기복무 제대군인</u></p> <p>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별표 2]

수영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자	1일 사용료		월 사용료		비 고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수영장	성 인	3,000	2,000	50,000	40,000	
	청 소 년 군 소 인	2,000	1,500	40,000	30,000	
	경 로 우 대 장 애 인 국 가 유 공 자 민 주 유 공 자 기 초 수 급 자 참 전 유 공 자 독 립 유 공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 특수임무유공자 의 사 상 자 국 군 포 로 병 역 명 문 가	1,500	1,000	25,000	20,0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시납 사용의 감면(성인의 경우에 한함):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li> <li>2.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2,000원</li> <li>3. 사용기간: 1일 1회 2시간</li> <li>4. 개인사물함 대여료: 월 3,000원</li> <li>5. 월경 여성 감면: 1개월 이상 이용권 구매자 10%</li> </ol>						

[별표 2]

수영장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자	1일 사용료		월 사용료		비 고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수영장	성 인	3,000	2,000	50,000	40,000	
	청 소 년 군 소 인	2,000	1,500	40,000	30,000	
	경 로 우 대 장 애 인 국 가 유 공 자 민 주 유 공 자 기 초 수 급 자 참 전 유 공 자 독 립 유 공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 특수임무유공자 의 사 상 자 국 군 포 로 병 역 명 문 가 장기복무제대군인	1,500	1,000	25,000	20,000	
<p>1. 일시납 사용의 감면(성인의 경우에 한함):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p> <p>2.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 2,000원</p> <p>3. 사용기간: 1일 1회 2시간</p> <p>4. 개인사물함 대여료: 월 3,000원</p> <p>5. 월경 여성 감면: 1개월 이상 이용권 구매자 10%</p>						

【의안번호 제3533호】

##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요지

가. 출연대상 : 전라남도

- 근거 :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나. 출연목적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

다. 사업내용

-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각종 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 녹색축산육성기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축산분야 사업

라.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마. 출연금액 : 125,000,000원 (2026년)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2025년 예산액	2026년 예산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출연금	2020년 ~2026년	125	125	125			125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안번호 제3534호】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위탁 동의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완도군자원관리센터((주)아라연환경)의 관리운영권이 2026. 4. 26.자로 만료됨에 따라,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근거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업무의 위탁)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2. 위탁개요

- 사업명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위탁 운영
- 위치 : 완도읍 망석리 1번지(현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 위탁기간 : '26. 4. 27. ~ '28. 1. 2. (약 20개월)
- 위탁범위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시설위치 :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서로 189-735
- 시설규모

소각시설	매립		재활용선별 처리시설	음식물적환장	침출수 처리시설
	면적	용량			
25톤/일	16,246㎡	129,332㎥	5톤/일	40톤/일	40톤/일

### □ 운영(주요)사업

#### ○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관리·운영 전반

- 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음식물적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사업장 청결 유지 및 폐가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 민간위탁 방법

-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 민간위탁 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20개월

#### ● 책임한계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음

● 지도·감독

-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정기 또는 필요 시 점검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4. 토론요지: 기재생략

5. 심사의견: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1. 관계법령 1부.

## □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5. 10. 30.)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15. 10. 30.)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완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 □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21조(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폐기물관리법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25. 10. 1.>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25. 10. 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의안번호 제3535호】

#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1. 10.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5. 11. 20.

다. 상정일자 : 2025. 11.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납부·감면·반환 등에 관한 자치법규가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않거나 모호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기·소상공인에게 애로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소하천 소액 점용료 등 미부과 기준 개선(안 제3조제1항)
- 소하천 점용료 등 인상률 상한 개선(안 제3조제5항)
- 소하천 점용료 등 분할납부 규정 개선(안 제5조제2항)
- 소하천 변상금 납부유예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 소하천 점용료 등의 반환 규정 개선(안 제7조제1항, 제2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납부·감면·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기재생략

6. 심사의견: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500원”을 “5,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⑤ 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제4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u>500원</u>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p> <p>② <u>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일할계산(1년의 일수를 나누어 계산)한다.</u></p> <p>③ · ④ (생략)</p> <p>&lt;신설&gt;</p>	<p>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  -----  --- <u>5,000원</u> -----  -----.</p> <p>② <u>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해당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시기) ①  (생략)</p> <p>② <u>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u></p>	<p>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u></p>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연간 2회 나누어내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2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과한다.

제6조(징수 및 시기)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

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제4항-----  
-----  
-----.

제6조(징수 및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의 조치를 하였거나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군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지방세과오납금 처리의 예에 따른다.

한다.

1.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허가 취소의 경우. 다만, 법 제17조제1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3조의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잔여일수를 산정한다.

[별표 1] (개정 2019. 12. 27.)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p>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3 이 경우 연접 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2개이상의 토지가격을 조사하여 평균산출된 가격으로 한다.</p>
<p>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p>	<p>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p> <p>1) 경작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인근 유사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 유사농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p> <p>2) 미식재부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0.8</p> <p>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2.5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립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p> <p>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p> <p>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0.75</p>

구 분	산 정 기 준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용도가 같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사용(농업용수 및 양식어업 용수의 인수)	0.5m <sup>3</sup> /sec까지는 연액 10,000원으로 하고 0.5m <sup>3</sup> /sec 이상은 매 0.5m <sup>3</sup> /sec 증가시 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다만, 0.05m <sup>3</sup> /sec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며 증가물량이 0.5m <sup>3</sup> /sec인 경우에는 0.5m <sup>3</sup> 로 본다
5. 지하의 유수 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월 200,000세제곱미터까지 월액 20,000원으로 하며, 월 1,000세제곱미터 증가시마다 50원씩 가산한다. 다만, 월 배수총량이 10,000세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월 증가액이 1,000세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000세제곱미터로 본다. 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월 100,000세제곱미터까지 월액 10,000원으로 하고, 월 1,000세제곱미터 증가시마다 50원씩 가산한다. 다만, 월 총배수량이 100,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증가물량이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0세제곱미터로 본다.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가. 군수가 전년도 10월중에 두차례에 걸쳐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100분의 15에 채취허가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군수가 감액조정할 수 있다. 나.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내 2개이상의 골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8. 죽목·갈대·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제8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별표 1]

점용료등 산정 기준표(제3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p>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연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3 이 경우 연접 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2개이상의 토지가격을 조사하여 평균산출된 가격으로 한다.</p>
<p>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p>	<p>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2.5 다만, 76. 8. 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립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등 구역내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0.75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용도가 같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p>

구 분	산 정 기 준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사용(농업용수 및 양식어업 용수의 인수)	<p>가. 공업용수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p> <p>나. 농업용수 : 63.3원/100,000m<sup>3</sup></p> <p>다. 발전용수 : 63.3원/10,000m<sup>3</sup></p> <p>라. 수열에너지용수 : 63.3원/10,000m<sup>3</sup></p> <p>마.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p>
5. 지하의 유수 채취	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삭제>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p>가. 군수가 전년도 10월중에 두차례에 걸쳐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100분의 15에 채취허가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군수가 감액 조정할 수 있다.</p> <p>나.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 원이 관내 2개이상의 골재판매업소를 대상으 로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 치를 기준으로 한다.</p>
8. 죽목·갈대·목초 및 기 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 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 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제4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p>1. 소하천점용료등</p> <p>가.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p> <p>나. 소하천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의 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p> <p>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p> <p>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p> <p>마. 소하천 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우수점·사용의 경우</p> <p>바.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용의 경우</p> <p>사. 한국농어촌공사 우수를 점·사용하는 경우</p> <p>아.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p>	<p>100%</p> <p>100%</p> <p>100%</p> <p>100%</p> <p>100%</p> <p>100%</p> <p>100%</p> <p>100%</p> <p>군수가 정하는 비율</p>
<p>2. 공유수면 점용료등</p> <p>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다만, 골재를 직접 채취하여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 목적을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p> <p>1) 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p> <p>2) 한국컨테이너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p> <p>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p> <p>4)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다만, 골재를 직접 채취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다. 재해 복구를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p> <p>라. 가목 및 나목의 자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하여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p>	<p>100%</p> <p>100%</p> <p>100%</p> <p>100%</p> <p>50%</p>

# 붙임4

# 개 정 안

[별표 2]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제4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분의 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한 경우	100분의 10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직접 점용등을 하는 경우	100분의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분의 100
5. 소하천 등의 자연갈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우수 점용의 경우	100분의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분의 100
7.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분의 100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0분의 100
9.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100분의 100
10.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100분의 100
11.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업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일 경우	100분의 100
1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 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1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을 환산한 비율로 감면